

개정 전	개정 후
	<p><u>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<u>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</u> <u>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</u> <u>용하는 경우</u></p>

■ 법률 부칙

제12조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· 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75조의5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.

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35조의6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)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”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</p>	<p>제35조의6(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